

【부 령】

- 농림축산식품부령제285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
- 국토교통부령제447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
- 국토교통부령제448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53
- 국토교통부령제450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59

【고 시】

- 교육부고시제2017-130호(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64
- 법무부고시제2017-164호(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64
- 법무부고시제2017-165호(국적이탈) 65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7-20호(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일부 개정) 66
-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7호(국적취득)..... 67
-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8호(국적상실)..... 67
-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8호(국적상실)..... 68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71호(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69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72호(지형도면<변경>) 71
-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6호(사설항로표지 기능통보<합평만목포건업A호등부표 외 1기>) 72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87호(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72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7-21호(항로표지 현황변경<폐지>) 72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7호(하천수 사용허가) 73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8호(하천수 사용허가) 73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9호(하천수 사용허가) 74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84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74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85호(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75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86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7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89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76

(이면 계속)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51호(금융투자업 업무폐지).....	79
○교육부공고제2017-235호(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9
○교육부공고제2017-236호(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0
○국방부공고제2017-216호(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81
○행정안전부공고제2017-87호(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82
○행정안전부공고제2017-91호(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3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60호(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83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61호(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62호(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85
○병무청공고제2017-61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86
○산림청공고제2017-25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24
○산림청공고제2017-25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5
○산림청공고제2017-260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6
○해양경찰청공고제2017-18호(교육기관 지정정지 취소 처분 취소).....	126
○제16전투비행단공고제2017-2호(공시송달)	127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82호(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128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17-85호(공시송달).....	130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17-3호(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	131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96호(공시송달).....	132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97호(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146

【법 원】

○판결(수원지방법원)	147
-------------------	-----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7-264호(학교<군산산들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157
--	-----

【상 훈】

○서훈(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	158
--------------------------	-----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159
○압수물환부공고(전주지방검찰청)	159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원·수원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제주지방법원)	160
○권리신청공고(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43

●행정안전부공고제2017-91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지역 변경으로 인하여,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현행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1의 “공여구역주변지역”에 5개 읍·면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화 : 02-2100-4228(FAX : 02-2100-375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2호(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sdangi@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전화 02-2100-42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6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88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내경엔지니어링(강한구) ② (주)케이씨씨건설(김중훈) ③ (주)서영엔지니어링(정몽열, 윤희영)

나. 전화번호 : ① 02-575-7184 ② 02-513-5543 ③ 02-6915-7134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88호

3. 명칭 : 메나지힌지를 이용하고 세미리지드파일과 복합거더를 일체화한 교량 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설계 및 구조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상부구조, 하부구조와 접속슬래브를 강결 일체화하여 무받침 무조인트의 다연속 프레임 구조를 구성하고, 상부구조는 강구조, PSC구조와 RC구조가 혼합하여 낮은 높이의 복합슬래브 단면으로 하며, 접속슬래브 내에 게르버힌지인 메나지장치를 설치하고, 교량시종점부에는 횡방향에 유연 및 축방향강성인 큰 단주의 세미리지드파일으로 지지하며, 상기 말뚝과 상부구조 연결을 강결 일체식 구조로 하거나 힌지 반일체식 구조로 구축하여 무·세미교대, 무받침, 무신축이음의 다연속·프레임 일체식 및 반일체식 복합슬래브 교량 구조체를 설계, 제작 및 시공방법에 대한 기술임.

<범위>

복합구조의 상부거더, 하부구조와 접속슬래브를 일체화 시키며, 교량시종점부에 세미리지드파일 설치와 강결이나 힌지 연결한 파일두부보강 구조로 지지하고, 접속슬래브에 게르버힌지인 메나지장치가 설치된 다경간 일체식 및 반일체식 복합거더 교량 공법

5. 보호기간 : 2013.01.31 ~ 2018.01.30.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6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89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